

「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2월 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「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으로 부서가 개편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,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흥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 명칭 현행화
 -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(안 제3조제2항)

2. 행정자치위원회

주민복지과, 행정과 재무과, 인구정책과,.....

⇒ 인구정책실, 주민복지과, 행정과, 재무과,.....

3. 산업건설위원회

스마트팜사업소 ⇒ 스마트팜사업소, 휴양공원사업소

○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 조정 : 6명 → 5명 이내(안 7조의2제2항)

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: 2024. 2. 1. ~ 2024. 2. 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조례 제2024- 호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주민복지과, 행정과 재무과, 인구정책과”를 “인구정책실, 주민복지과, 행정과, 재무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스마트팜사업소를 “스마트팜사업소, 휴양공원사업소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2항 중 “6명”을 “5명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실, 종합민원실, <u>주민복지과</u> , <u>행정과</u> , <u>재무과</u> , <u>인구정책과</u> , 여성가족과, 문화체육과, 보건소,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3. 산업건설위원회 관광정책실, 우주항공추진단, 경제산업과, 농업정책과, 해양수산물과, 축산정책과, 환경산림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<u>스마트팜사업소</u> 소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① (생략)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<u>6명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인구정책실</u> , <u>주민복지과</u> , <u>행정과</u> , <u>재무과</u> ----- ----- -----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스마트팜사업소</u> , <u>휴양공원사업소</u> ----- 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5명 이내</u> ----- -----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